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0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중소기업청장

1. 개정 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2237호, 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예정)됨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투자가 가능한 개인이 될 수 있는 투자실적·경력·자격요건 등의 기준을 정하고,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엔젤 세부 기준 마련(안 제2조의3,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2)

- 1) 최근 3년 이내 창업자 등의 신주를 1년 이상 보유했거나 보유 중 투자실적이 있을 것
- 2) 상장 기업의 전현직 창업자 및 임원 경력 보유자, 창투자 등의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경력자 등
- 3) 파산 선고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 실형집행(면제) 후 5년 미경과자 등은 배제

다. 한국벤처투자조합 거래규제 개선(안 제3조의9제3항 및 제4항)

주요출자자 및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제한 규정을 네거티브로 전환, 거래 제한을 적용받는 주요출자자 범위를 펀드 지분을 5%에서 10%로 완화

라. 개인투자조합 설립 부담 완화(안 제5조제1항제1호)

최소 결성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

마. 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확대(안 제11조의3제4항제11~13호)

비상장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의사·약사·기술사까지 확대

3.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전화 : 042-481-8953, Fax : 042-481-44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본문 중 “(7)”을 “(8)”로 한다.

제2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기업이 발행한 신주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로서 1년 이상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해당 신주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실적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출 것

가. 상장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였던 사람(상장 당시 등기이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상장기업의 등기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에서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공계열·경상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마.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경력을 갖추거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문 개인투자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중소기업청장에게 제1호부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제출한 자료의 유효기간은 제출한 날로부터 2년으로 본다)

제3조의9제3항제1호라목의 본문 중 “100분의 5이상”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3조의9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투자하거나 그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고,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5조제1항제1호 중 “2억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의료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2. 「약사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약사 또는 한약사
13. 「기술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술사

제1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법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에 위탁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8) 및 이 영 제2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실적 보고 중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따른 개인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따른 개인의 투자금액 확인 등에 관한 사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7)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p> <p>② < 생 략 ></p> <p>③ < 신 설 ></p>	<p>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p> <p>② < 현행과 같음 ></p> <p>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p style="margin-left: 2em;">1. 다음 각목의 기업이 발행한 신주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로서 1년 이상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해당 신주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실적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외한다)</p> <p style="margin-left: 2em;">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p>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것

가. 상장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였던 사람(상장 당시 등기이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상장기업의 등기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에서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공계열·경상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마.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경력을 갖추거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문 개인투자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p>제3조의9(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p> <p>①~② < 생략 ></p> <p>③ 법 제4조의4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p> <p>가~다. < 생략 ></p> <p>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출</p>	<p>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p> <p>4. 중소기업청장에게 제1호부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제출한 자료의 유효기간은 제출한 날로부터 2년으로 본다)</p> <p>제3조의9(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p> <p>①~③ < 현행과 같음 ></p> <p>③ 법 제4조의4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p> <p>가~다. < 현행과 같음 ></p> <p>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p>
--	---

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신 설>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과 절차) ①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5. <생 략>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 <생 략>
1. ~ 10. (생 략)
11. ~ 14. <신 설>

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투자하거나 그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고,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과 절차) ①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5.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의료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

⑤ ~ ⑧ < 생략 >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3. < 생략 >

②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

2. < 생략 >

③ < 신설 >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청장(법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

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2. 「약사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약사 또는 한약사

13. 「기술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술사

⑤ ~ ⑧ < 현행과 같음 >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3. <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법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에 위탁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8) 및 이 영 제2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실적보고 중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따른 개인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청장(법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

업청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

1. < 신 설 >

업청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

1.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따른 개인의 투자금액 확인 등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연 락 처	(042) 481 - 8953